

◎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-10호

「도로법」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 및 동법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,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 등)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,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02월 23일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

- 1. 공고사유 :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
- 2. 공고기간 : 2023.2.23. ~ 2023.3.9.(15일간)
- 3. 공고내용

가. 「도로법」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압류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

나. 압류 이후 납부기한까지(~2023.3.31.)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채권 추심 실시 가능

다.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

- 제출기한 : 공고기간 내
- 제출내용 : 의견진술서, 증빙자료
- 제출방법 :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(054.260.2529), 등기우편 이용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54.260.2592)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〉

순번	이름	실명번호	주소	압류물건	비고
1	신미○	661205-2*****	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소오길	19개 시중은행 채권	
2	손중○	690301-1*****	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	19개 시중은행 채권	
3	서정○	590225-1*****	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	19개 시중은행 채권	

끝.